



무배당

#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 (Hi1210)

선택이 아닌 필수!  
무배당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이  
튼튼한 성공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실화책임 걱정 끝!

배상책임, 벌금도 OK!



높은  
만기환급률



지진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까지 보장!

하이플래너 : 행복  
소 속 : 프로중앙지점  
전 화 번 호 : 031-567-5656  
핸 드 폰 : 010-8771-6749

**H** 현대해상화재보험

# 재물보험의 성공시대가 열린다!



고객님께 높은 만기환급률로  
보답해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 보상!  
(해당 보장특약 가입시)

### • 지진손해

건축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높이 3층이상, 1,000㎡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됐지만 이전 건축물 및 국내 전체 건축물의 85%를 차지하는 1, 2층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

### • 비특수건물 풍수재 손해 보장

비특수건물의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생긴 손해를 보상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 · 교육시설 · 백화점 · 시장 · 의료시설 · 흥행차 · 숙박업소 · 다중이용업소 · 운수시설 · 공항 · 공용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확대에  
대비 가입 업종 확대!

### • 시설소유 · 관리자 업종 확대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적·물적 피해가 높은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건물 3.3%(2009년 기준)에 불과한 다중이용업소 건물의 화재보험 의무화 확대 대비



영업장(일반, 공장)과 거주지(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

### • 5개 주소지까지 가입 가능!

• 영업장은 실손비례보상, 주택건물은 실손보상!(화재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풍수재손해)



다양한 납만기 제공!



할인 혜택 제공!

### • 만기고객 보험료 할인 혜택!

- ①보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 또는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의 계약
- ②이미 납입한 보험료(수시납 제외)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다른 장기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납입보험료 총액과 합산)
- ①, ②번 동시 만족 고객에게, 납입보험료의 1% 할인!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꼭 체크해야하는 것!

'이웃 건물로 번진 불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실화책임에 관한  
개정법을 시행**

2009년 5월 8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인근 점포나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화재를 내면 배상책임은  
물론 벌금도 부과된다'  
...> **배상책임에 벌금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의 출동과 경찰조사가 진행되는데, **실수로 인한 화재라도** 그 피해 결과에 따라 검찰기소를 통해 형법 제 170조(실화),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위험보장은 물론, 재테크까지!  
선택 비용이 아닌, 필수 비용입니다!



## 가입안내

구분	적용이율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기본 계약	기본계약 (화재상해후유장해)	3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4년만기	3년납, 전기납, 일시납	
		5년만기	3년납, 전기납, 일시납	
		7년만기	3년/5년납, 전기납, 일시납	
		10년만기	3년/5년/7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3년/5년/7년/10년납, 전기납, 일시납	
선택 계약	주유소시설소유 · 관리지배상책임(갱신형) 주차장시설소유 · 관리지배상책임(갱신형)  기타선택계약	보장부분 : 4.0% 적립부분 : 보장성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2.0%)	〈최초계약〉 3년만기 〈갱신계약〉 1~3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3년만기	전기납, 일시납	
		4년만기	3년납, 전기납, 일시납	
		5년만기	3년납, 전기납, 일시납	
		7년만기	3년/5년납, 전기납, 일시납	
		10년만기	3년/5년/7년납, 전기납, 일시납	
15년만기	3년/5년/7년/10년납, 전기납, 일시납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은 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구분	기본계약 (화재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질병사망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상해사망,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	근로자과로사	자동차사고별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사망, 중과실, 중상해),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기타 선택계약
가입 나이	0세 ~ (80-보험기간)세	만 15세 ~ (80-보험기간)세	18세 ~ (60-보험기간)세	18세 ~ (80-보험기간)세	0세 ~ (80-보험기간)세	0세 ~ (80-보험기간)세

# 재물보험, 지출이 아닌 재테크!



## ☞ 보장해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화재상해후유장해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재물 손해	화재손해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제거비용: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 실는 비용 (오염제거비용 제외)	주택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비례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구내폭발·파열손해	보험목적에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붕괴·침강·사태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풍수재손해	풍수재(특수건물의 경우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 건물	주택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비특수 건물	주택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전기손해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냉동·냉장물손해	보험목적에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항공기·차량손해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및 그로 인한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구내강도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도난손해	보험목적에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점포휴업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지진손해	지진으로 인해 보험목적에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내림, 파문함 등의 손해, 손해 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가입한 건물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일반, 공장>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일반, 공장)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가입한 시설에 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위조지폐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내에서 위조지폐를 수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배상 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신체손해배상책임(화재, 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인당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8천만원 한도	
	음식물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A형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실손보상 • B형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실손보상 • C형 :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실손보상 • D형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배상 책임	학교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역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주요소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경신형)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요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주차장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경신형)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손보상 한도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인당</td> <td>1사고당</td> </tr> <tr> <td>A형</td> <td>2천만원</td> <td>1억원</td> </tr> </table>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구분	1인당	1사고당	A형	2천만원	1억원
	구분	1인당	1사고당						
	A형	2천만원	1억원						
	약국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천만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가스사고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대인 사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망: 8천만원</li> <li>• 1인당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li> <li>• 1인당 후유장애: 최고 8천만원 한도</li> </ul> </td> </tr> <tr> <td>대물 사고</td> <td>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td> </tr> </table>	대인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망: 8천만원</li> <li>• 1인당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li> <li>• 1인당 후유장애: 최고 8천만원 한도</li> </ul>	대물 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대인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망: 8천만원</li> <li>• 1인당 부상: 최고 1,500만원 한도</li> <li>• 1인당 후유장애: 최고 8천만원 한도</li> </ul>							
대물 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임차차배상책임 (화재)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의약품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형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한도 실손보상</li> <li>• B형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천만원한도 실손보상</li> <li>• C형 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실손보상</li> </ul>							
무배당 사회복지관시설 소유·관리자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형: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실손보상</li> <li>• B형: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실손보상</li> <li>• C형: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실손보상</li> <li>• D형: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 실손보상</li> </ul> ※자기부담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사망 후유 장해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화재상해사망	화재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근로자과로사	업무중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내지 심질환의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팔뚝손가락후유장해	상해로 팔뚝손가락에 3%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소득보상)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특약가입금액 20% × 5년확정지급						
	업무중상해후유장해 (50%이상, 소득보상)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특약가입금액 20% × 5년확정지급						
진단	골절진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진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당신의 소중한 재산! 튼튼하게 ~



## ▶ 보장해설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업무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업무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한도)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	음식물의 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 한도)															
수술	골절수술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화상수술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벌금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된 경우	면허정지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사망, 중과실,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 <table border="1"> <tr> <td>사망</td> <td>3,000만원</td> </tr> <tr> <td>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td> <td>6 주이상 진단시 : 1,000만원 10 주이상 진단시 : 2,000만원 20 주이상 진단시 : 3,000만원</td> </tr> <tr> <td>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td> <td>3,000만원</td> </tr> </table>	사망	3,000만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6 주이상 진단시 : 1,000만원 10 주이상 진단시 : 2,000만원 20 주이상 진단시 : 3,000만원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3,000만원									
	사망	3,000만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6 주이상 진단시 : 1,000만원 10 주이상 진단시 : 2,000만원 20 주이상 진단시 : 3,000만원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시	3,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하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table border="1"> <tr> <th>상해급수</th> <th>지급금액</th> </tr> <tr> <td>1급</td> <td>600만원</td> </tr> <tr> <td>2~4급</td> <td>300만원</td> </tr> <tr> <td>5급</td> <td>150만원</td> </tr> <tr> <td>6급</td> <td>80만원</td> </tr> <tr> <td>7급</td> <td>40만원</td> </tr> <tr> <td>8~11급</td> <td>20만원</td> </tr> <tr> <td>12~14급</td> <td>10만원</td> </tr> </table>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table border="1"> <tr> <th>상해급수</th> <th>지급금액</th> </tr> <tr> <td>1급</td> <td>600만원</td> </tr> <tr> <td>2~4급</td> <td>300만원</td> </tr> <tr> <td>5급</td> <td>150만원</td> </tr> <tr> <td>6급</td> <td>80만원</td> </tr> <tr> <td>7급</td> <td>40만원</td> </tr> <tr> <td>8~11급</td> <td>20만원</td> </tr> <tr> <td>12~14급</td> <td>10만원</td> </tr> </table>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상해급수	지급금액																	
1급	600만원																	
2~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한도 실손보상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한도 실손보상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법률비용손해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사교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사교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합니다. (단, 제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합니다.)
- \*보험용어해설 ▶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보험가액(계약자가 보험가입한 목적물의 실제가치) 한도)
  - 실손비례보상: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보험가액 한도)
    -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풍수재손해, 전기손해, 냉동·냉장물손해, 항공기·차량손해, 도난손해, 지진손해, 화재별금, 배상책임관련 선택계약 등의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보장특약의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점플랜 가입예시

▶ 가입기준 • 일반음식점, 1급, 지상 165㎡, 도시가스, 연간매출액 2억, 5년만기, 전기납

구분	보장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구분	보장	가입금액	보장보험료
상해 담보	기본계약(화재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5원	기타 선택 특약	도난손해	2천만원	4,280원
	화재상해시상	1천만원	12원		구내강도손해	1백만원	72원
	화재별금	2천만원	2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1사고당 3억원 1인당 3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2,646원
재물 손해 담보	화재 손해	건물	1억원			9,100원	가스사고배상책임(LNG)
		시설	5천만원	4,550원	음식물배상책임	1사고당 1억원 1인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3,047원
		집기비품	2천만원	1,820원			
		상품/반제품	1천만원	1,260원			
기타선택특약	구내폭발파열손해	1억 8천만원	9,000원				

## ▶ 보험료 및 만기환급률

구분	월납보험료	만기환급금	만기환급률	월납보험료	만기환급금	만기환급률	월납보험료	만기환급금	만기환급률
3년만기	200,000원	5,654,060원	78.5%	300,000원	9,120,880원	84.5%	500,000원	16,054,500원	89.2%
5년만기		9,755,410원	81.3%		15,766,200원	87.6%		27,787,790원	92.6%
10년만기		20,236,540원	84.3%		32,917,650원	91.4%		59,720,850원	99.5%

- \*만기환급률은 정기적으로 납입된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적용이율 4.0%(보장성 공시이율, 2012년 10월 현재)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장성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 \*상기 예시금액은 중도인출금 미인출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중도인출금 인출시 상기 만기환급률은 변동됩니다.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피보험자의 직업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해지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5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20만원, 중도인출금 미 인출시

(단위: 원)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납입보험료	2,400,000	4,800,000	7,200,000	9,600,000	12,000,000	
해지환급금 (환급률)	적용이율	1,263,950 (52.7%)	3,274,280 (68.2%)	5,355,730 (74.4%)	7,515,410 (78.3%)	9,755,500 (81.3%)
	최저보증이율	1,248,710 (52.0%)	3,199,770 (66.7%)	5,187,180 (72.0%)	7,211,830 (75.1%)	9,273,990 (77.3%)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4.0%(보장성 공시이율, 201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금 인출시 상기해지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이율> • 납입경과기간 1년미만: 보장성 공시이율 × 80% • 납입경과기간 1년이상 2년미만: 보장성 공시이율 × 90% • 납입경과기간 2년이상: 보장성 공시이율
- \*손해보험 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려서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보험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면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가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당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e-금융민원센터: www.fcsc.or.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1372 • 인터넷: www.kca.go.kr
- 연말정산 소득공제**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센터: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를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품질보증제도** ▶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 저가레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를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 •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대한손해보험협회: • 전화: (02)3702-8585 • 팩스: (02)3702-8691 •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내 「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보험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전화: 1588-3311 • 팩스: (02)3145-8815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보험범죄신고」 인터넷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 연해상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02)734-5653 • 팩스: (02)722-5350
- 보험가액 안내** ▶ 이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액(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사실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의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무배당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Hi1210)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의 보상조건, 면책조항 및 제반사항은 약관규정에 따릅니다. 이 안내장은 계약자용 필름입니다.

고객콜센터 고객콜센터는 사고접수와 보험관련 업무시 발생하는 공금증 및 불만사항을 안내, 상담해 드리는 대고객 통신서비스입니다.

# 1588-5656

 (연중 무휴접수)

고객님의 사업 성공을 위해~ 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과 함께!



## 상담전화

하이플래너 : 행복

소 속 : 프로중앙지점

전화번호 : 031-567-5656

핸드폰 : 010-8771-6749

**H 현대해상화재보험** 110-731 서울 중로구 세종로 178번지 현대해상빌딩 대표전화: 1588-5656 www.hi.co.kr